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86125 정산금 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섭, 김의환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변론종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8. 17.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50,686,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 나. B사업의 개요

#### 1) 목적 및 추진 경위

피고는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하는 것 외에도 군용헬기는 물론 민수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B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B 개발사업(B Program, 이하 'B사업'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1))와 방위사업청의 주관하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2) 사업추진체계

B사업에 관하여, 원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개발주관사업자로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분당된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업무 수행, 체계규격서 작성,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개발시험

<sup>1)</sup>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을 통하여 체계개발을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체계결합을 책임지는 역할을, 국과연 및 항우연은 이를 지원하고,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및 군용 핵심구성품 일부를 책임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 다. B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6. 6. 7.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B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협약금액: 133,015,000,000원

(정부출연 106,412,005,000원, 업체투자 26,602,995,000원)

○ 혐약기간 : 2006. 6. 1.부터 2012. 6. 30.까지

○ 협약보증금: 13,301,500,000원 (납부방법: 보증보험)

○ 지체상금율 : 제조구매 1.5/1000, 용역 2.5/1000

○ 납품일자 2008. 10. 30.부터 2012. 6. 30.까지

#### 【협약특수조건】

제2조(현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B사업 공동규정(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 공동훈령) 등에 의거 원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들과 함께 B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데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

#### 제4조(협약문서의 생략)

다음 사항은 협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협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과 내용 상충시 본 협약조건이 우선한다.

- 1. B사업 공동규정(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 공동훈령)
- 1. B 민.군 겸용 구성품 개발사업 관리지침

제6조(계산기준의 적용)

협약보증금 설정, 지체상금 및 국산화위약금 부과 등의 계산기준은 정부 출연금과 업체



투자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정부 출연금 지급보증은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협약체결)

- ① 본 협약은 B 공동규정 및 B 민.군 겸용 구성품개발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 총 개발기 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며,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업체투자금 등은 정부정책 및 예산규 모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 ② 원고는 협약체결시 협약이행의 보증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협약기간 개시일부터 협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까지이어야 하고, 증권 또는 보증서의 수취인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③ 협약보증금의 반환,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상의 계약보증금 반환, 국고귀속 등의 조항을 준용한다.

####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⑩ 원고와 그 하도급업체들이 개발비를 분담(20%)하여 투자함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된 정부출연금과 업체 투자금액 구분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업체투자금을 제외한 정부출연금만을 협약대금으로 지급한다. 원고는 협약대금 청구시 분담비율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업체투자금액을 별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과 업체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확정 및 정산)

- ① 협약체결시의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 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 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 등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 경을 할 수 있으며, 피고(사업단)의 승인분에 한한다.
- ② 원고는 협약서상의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피고의 비용통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원고와 그 하도급업체들은 피고가 원가정산을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와 그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피고가 조사하여 결정한 원가를 확정



원가로 한다. 또한 원고는 직접 인시수 관리를 위한 피고의 해당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원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최종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피고에게 지출하고, 피고는 6개월 내에 협약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협약완료 이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하도 급업체들의 해당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최종납품이 완료된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 에 부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 1. 공동연구사업으로서 외국기관이 지급한 사업비는 계약서 및 은행에서 발행한 송금영수 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대신 공인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로 정산에 갈음하며,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공동규정, 관리지침 등의 규정 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감사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 ⑥ 원고는 피고의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사업비 정산을 확정하고 정부출연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0조(감독 및 검사)

⑤ 원고는 적용규격서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술관리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원고는 협약품목이 검사시점의 해당 적용규격서와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술관리기관의 확인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제13조(납품)

- ①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기술관리기관이 날인하고, 피고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 ② 제1항의 검수는 기술관리기관의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협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 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협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15조(지체상금)

- ① 납품지체사항 발생시 지체상금부과 및 면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물품구매협약일반조건, 기술용역협약일반조건, 방위사업청의 관리규정 등을 적용한다.
- ②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협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체상금율은 해당 업무성격에 따라 제조.구매(1.5/1,000) 및 용역(2.5/1,000) 기준을 각각적용한다.

#### 제19조(보증)

- ① 원고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체계개발완료시(2012. 6. 30.)까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협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협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는 즉시 기술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계획수립 및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기술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당해 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략)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 및 그 하도급업체들은 당해 물품의 가액을 반환하고, 당해 물품의 협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24조(현약의 변경)

- ① 협약체결 후 피고와 원고는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1. 개발목표, 총괄책임자, 협력업체, 위탁기관 등의 변경
- 2. 협약기간의 조정
- 3. 납기 및 납지
- 4. 납품물, 협약물품의 수량 및 협약금액

#### 제27조(국산화율 향상 및 외화절약)

② 원고는 국산화계획에 의거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및 승인된 세부이행계획



서상의 각 품목별로 국산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③ 국산화 이행여부 판단은 협약서 및 세부이행계획서상의 개발대상 품목별 해당 국산화 이행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는 국산화 대상품목의 국산화 미이행시 당해품목 국산화 계획가격의 10%를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32조(기술의 권리귀속 및 사용권)

- ① 본 개발협약에 의해 획득 발생된 기술(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권리(원천기술 제외) 및 사용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협약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자료의 보관, 관리 및 기술사용권을 본 사업목적에 한하여 허여한다. 단, 피고의 권리 및 사용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거나, 원고가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세부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② 원고가 본 협약이행 중 획득 및 생성한 모든 기술자료는 기술관리기관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권리가 피고에게 있는 기술자료는 협약 종료시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양산 또는 파생형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 협의하여 조치한다.

#### 제44조(재판관할)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47조(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 ① 원고는 연구개발 비용 및 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EVMS :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협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최초 성과관리계획서를, 2007년부터는 매년 11월 말까지 보완된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작업정의, 개발일정 및 예산할당(실제 소요예산 기준), 성과 측정방법 등의 성과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 ④ 계획 승인 후 원고는 사업단의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일정 편차분석 보고서 를 월별로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원고는 필요 시(비용 및 일정편차가 계획예산 대비 위험치 10%를 초과할 경우) 대책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⑥ 원고는 자료미비 및 일정 미준수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고, 사유가 인정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용한다.
- ① 피고는 현시점의 비용 및 일정편차가 한계치를 초과하여 개발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획득방법 변경(구매 혹은 개발 취소) 또는 재설계 요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협약품목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개발비용 및 일정보고는 원고와 하도급업체 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 ⑨ 하도급업체에 대한 비용/일정 편차 분석보고서를 위한 자료는 원고가 종합하여 피고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⑩ 성과관리체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실투입비용(AC: Actual Cost)은 개발비용의 원가 정산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성과관리체계에 처리되지 않은 실투입비용은 원가정산시 사업단의 승인 후 정산에 반영한다.

#### 라. 이 사건 협약내용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기간 동안 B 민·군 겸용 구성품 개발사업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당해 연도 협약금액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배정에 따른 것으로, 위 5차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 당시 정하였던 총 협약금액과 정부출연금 및 업체투자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었다.

#### 마. 원고의 납품의무 이행 및 환차손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 청구

- 1)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핵심 구성품 및 체계개발결과 완료된 설계 / 해석보고서,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2012. 6. 30.경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발생을 알렸고, 2012. 11. 21. 피고에게 초과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의 문언내용, 이 사건 협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 경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공법관계에 있어 보다 폭넓게 인정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 조 제1항은 물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초과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이상 피고는 이를 전부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정한 것이고, 피고의 승인 은 위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초과비용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하는 과 정에서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합계 12,650,686,614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비용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초과비용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이라도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 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관리시스 템 등을 통하여 환율변동 상황 및 이로 인한 초과비용 발생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해 왔고,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초과비용 정산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초과비용 지급에 관한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나, 그 내용은 원고가 연구개발의 결과로 산출한 유형적, 무형적 재산을 피고에게 '납품'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원고에게 지불하며, 원가정산의 방식으로 보상비용을 산정하고, 원고의 납품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조달계약과 그 성격이 유사한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에 대하여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피고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12,650,686,614원의 초과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따라 초과비용의 지급을 위해 '피고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위 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3) 피고는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으로 물가상승,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하였던바, 피고가 초과비용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초과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현저히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판단



# 1)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초과비용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 및 피고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이 "협약체결시의 협약금액 이외 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 용이나 개발계획서 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 과비용 등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피고(사업 단)의 승인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정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협약 체결시 정한 총 협약금액 133.015.000.000원 (정부출연 106.412.005.000위, 원고출연 26.602.995.000위)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예외적으로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에도 피고의 승인분 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승인은 단순히 절차적으로 원고가 산정한 초과비용의 객관성을 확인하는 의미만을 지 닌 것이 아니라, 금액 변경을 위한 피고의 구체적인 협약 변경계약 체결의 의사를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사나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 없이 이 사건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당연히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가 국가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한 약정의 내용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초과비용 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명시적으로 초과비용 지급에 관한 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 내지 8,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달 원고로부



터 환율변동 등에 따른 초과비용 발생 내역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 속 진행시킨 사실, 피고가 2010. 8. 31. 원고 등에게 '검토결과 1,092.5억 원의 환차손 이 발생하였으나. 적용기준 상이 등으로 세부 내용은 정산시 재검토 필요'. '항공기 원 가팀 의견을 근거로 중기계획 반영 요구 및 가용재원 확보 노력' 등의 취지를 기재한 B사업 환차손 자료 작성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 B사업단 측 기조팀, 함정항공 원가분석팀, 지출심사팀이 2011. 3. 4. 환차손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 였고, 2011, 6, 1, 개최된 B사업 관련 정부와 개발주관기관 간 월간회의에서 B사업단 기조팀장이 '환차손, 비용 초과 정산 관련하여 사업단에서도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발 언하였으며, 2012. 3. 16.에도 방위사업청 함정항공원가분석팀의 주관으로 원고 등이 참석하여 B사업 정산기준 검토를 위한 회의를 한 사실, 피고가 B사업비 중 일정 금액 을 출연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출연 부분에 해당하는 환차손 보전 방안을 문의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초과비용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승 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않기로 한 초과비 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변경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변경계약 체결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확정적인 승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협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으로서 공법상 계약인바[그 구체적 논거는 이



사건 환송 전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526 판결)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 판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에 적어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법률에 따른 피고의 계약금액조정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위해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로서(국가계약법 제1조, 제4조),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현실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인 점, 국가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대금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계약 진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국가계약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별도의 공법을 근거 법률로 하여 체결된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국가계약법 제3조,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 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9433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협약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 협약으로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 사건 협약에 국가계약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이 연구개발의 결과물 및 기술에 관한 권리 이전 규정(제33조). 이행보증 규정(제7조 제2항), 지체상금 규정(제15조), 위약벌 규정(제28조) 등과 같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정부조달계약에 통상적으로 삽입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은 근본적으로는 군(軍)의 요구 성능이 충족된 B를 개발하고<sup>2)</sup>.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민수용 헬기의 독자개발 역량을 확보하고자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공영역에서 소요되는 물품 등을 납품하는 정부조달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속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3)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계획서,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7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제10조) '출연금'이 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의미한다(제2조 제7호). 또한 항공 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 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ㆍ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시책을 추 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정부는 이를 위하여 국·공립연구기 관, 국과연,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으로 하여

<sup>2)</sup> 종전에 운영 중이던 기동형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 헬기 개발

<sup>3)</sup> 각 조항별로 개정된 연혁이 다르나,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일반적인 취지의 변화는 없으므로 이하 이 규정을 기준으로 말한다.



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3항에서 정부는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앞서 본 이 사건 협약의 근본적 목적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본질적 성격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및 항공우주산업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연구경비로 지급하는 '출연금'의 성질을 지니 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8조는 피고가 지급하는 대가, 즉 협약대금이 정부출연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은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 안보 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제15조 제3항 제1호),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귀속관계가 이 사건 협약의 성격을 가리는 절대적 징표가 된 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평가결과 등과 관련된 제재 조치 등에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진행이라는 공익의보호를 그 궁극적인 이유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협약의 경우도 피고의 감독 및 검사(제10조), 시험평가(제40조), 일정관리(제47조) 조항 등에서 행정주체로서의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은 B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는데 위개발사업의 목적은 B를 개발하여 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과 함께 항공방산업체로 하여금 헬기 자체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가격 경쟁력 있는 민수용 헬기를 공급하고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에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



되는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결과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정에서의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군수용 헬기 양산과정이나 민수용 헬기 개발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바. 원고는 통상적 인 정부조달계약에서의 계약당사자와는 사업의 진행과 결과에 관하여 차원이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되는 점(이러한 이유로 원고 역시 개발비용의 20%를 개발투자금으로 부 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납품하여야 하는 핵심구성품은 군수용 헬기의 구성 품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약 특수조 건 제4조는 B사업의 구체적 지침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 공동훈령인 B 사업 공동규정, 산업통상자워부의 B 민군 겸용 구성품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을 이 사건 협약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통상적인 정부조달계약과는 차별화된 모습인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개발 주관기관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국가계약법령상의 입찰절 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B사업이 결정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 하여금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제작·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이 지체 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물리거나 국산화율을 달성하지 못한 때 위약벌을 부과하고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이행보장 및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의 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협약이 원고가 연구결 과물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순한 정부조달계약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특수 한 공공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 협약으로 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및 그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어



디에도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상 협약의 목적은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이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 정부조달계약의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그 재원이 출연금 예산으 로 배정되어 있는 점(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10조),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다른 용 도로 사용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점(제10조, 제11조), 성과물(결 과물)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인정되는 점, 연구부정행위 등 협 약 위반여부에 관한 검증 및 제재규정(제20조)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국가계약법 제3 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7조 제1항은 협약으로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제4호),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에 관한 사항(제6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제8호),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제10호),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제11호),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제15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협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별규 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도 제9조 제1항에서 사업비용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의 변경으로 취급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에 따른 협약규정으로 봄 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와는 다 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국가계약법 제19조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 사건 협약에 국가계약법 제19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을 통해 "협약체결시 협약



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 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 등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피고(사업단)의 승인분에 한한다."고 약정한 것은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로 보이는바,이는 유효하고(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적용배제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협약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 협약인 점,이 사건 협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무효로 판단할 정도로 원고의 계약상이의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

# 3) 피고가 초과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서 피고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초과비용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살핀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위 제3.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초과비용지급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승인절차 없이도 초과비용을지급할 것이라거나, 초과비용 발생시 반드시 승인을 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이 협약내용에 편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협약에서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이 협약내용에 편입된 것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통해 단순히 대가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정에서의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군수용 헬기 양산과정이나 민수용 헬기 개발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바 그와 같은 고려가 특수조건의 내용 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협약은 B를 개발하여 군의수요를 충족하는 것과 함께 항공방산업체로 하여금 헬기 자체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가격 경쟁력 있는 민수용 헬기를 공급하고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하는 것에 있어 그 궁극적인 목적에 공익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협약의 근거가 된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지 여부, 지원한다면 그 지원액의 결정,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협약의 총 협약금액, 원고의 부담비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초과비용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김병훈

판사 김우진



별지

####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 의 3 이상 증감된 때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 7.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 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 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기획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 간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비의 분담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산학협력(「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



록 장려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 4.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제7조(현약의 체결)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제7항에 따라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 개발비를 정산(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 는 금액
-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 게 하는 금액(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



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단가)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각 호의 서식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시작품) 등 유형 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 6.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 7.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 야 한다.
- ④ 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 4조 제4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끝.